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2호 2020. 3. 13(금)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647호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남원시 규칙 제648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남원시 규칙 제649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09호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5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4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37
- 남원시 고시 제2020-46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38
- 남원시 고시 제2020-4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40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553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41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13일

남원시 규칙 제647호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를 “제28조 규정에 따라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심의회”를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국·소장, 기획실장, 감사실장이 된다.

제2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이”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매주 1회”를 “남원시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월 1회”로, “필요가 있는 때 수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실장에게”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

다.

제9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실장으로부터”를 “법제업무 담당으로부터”로 한다.

제13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법무업무담당주사가”를 “법제업무담당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제28조 규정에 따라 <u>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u>의 운영에 ----- -----.</p> |
| <p>제2조(구성) ① <u>심의회</u>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② <u>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이 된다.</u> 다만, 제3조제5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u>시장</u>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 <p>제2조(구성) ① <u>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u>-----.</p> <p>② <u>위원은 국·소장, 기획실장, 감사실장이 된다.</u> ----- ----- ----- ----- ----- ----- ----- ----- ----- ----- ----- <u>시장</u>이 <u>성별을 고려하여</u> ----- -----.</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u>매주 1회</u> 소집하고</p> | <p>제6조(회의소집) ① ----- ----- ----- <u>남원시의회</u> <u>회기 일</u></p> |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생략)

제7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획실장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안목록과 함께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대리출석) ① (생략)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조례안 검토) ①·② (생략)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

정에 따라 월 1회 -----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안제출) ① -----

-----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 따른 -----

-----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대리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은 -----

-----.

제10조(조례안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붙

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1조(심의결과) ① (생략)

②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기획실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의안 상단에 심의 필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여 -----.

제11조(심의결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준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

② -----

법제업무담당으로부터 -----
-----.

제13조(수당 등) -----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제14조(간사) ① -----

-----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생략)

의 -----.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13일

남원시 규칙 제648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5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 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 3.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삭 제</p> <p>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u>50</u> 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p> <p>2. (생 략)</p> <p>③ · ④ (생 략)</p> | <p>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p> <p>② ----- ----- -----.</p> <p>1. ----- <u>100</u> <u>미터</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13일

남원시 규칙 제649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을 “(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3조제1항”으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설·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3년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설·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장별로 지원

2.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기업별 보조금 지원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업·법인·단체·분양전문 대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은 삭제하며,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제

목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보조금”을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보조금 신청서”로 하며, 별지 제13-2호 서식 제목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를 “투자유치 활동 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3 제2항 관련)

| 대상요건 | 보조금 지급율 | 비고 |
|--|------------|------------------------------------|
| 6,600m ² ~ 33,000m ²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건축연면적 3배수 내 부지 인정면적 제한 |
| 33,000m ² ~ 66,000m ²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
| 66,000m ² ~ 99,000m ²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
| 99,000m ² 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 관련)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frac{80}{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공제액)]× 지원비율】 × $\frac{20}{100}$

○ 투자고용계수 = $\frac{\text{종업원수(명)}}{\text{투자액(억원)}}$

* 종업원 수 : 투자보조금 정산시의 상시고용인원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3]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 구분 | 지 급 기 준 | |
|-------------------------------|---|---|
| 지급 업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관광사업 ◦기타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 | 국내기업 · 외투기업 |
| | 개인 법인 단체 | ① 원화기준 50억 이상 ~ 500억 미만 : 0.10% ② 원화기준 500억 이상 ~ : 0.15%(최고 1억원) |
| | 공무원 | - 개인·법인·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 (최고 1천만원) |
| | 분양전문 대행사 | ① 원화기준 50억 이상 ~ 500억 미만 : 0.15% ② 원화기준 500억 이상 ~ : 0.20%(최고 2억원) |
| 지급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 | |
| 지원대상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 | | |
| | 법인 본사 소재지 | 전화 | 팩스 | | | | | |
| | | E-mail. | | | | | | |
| 신청보조금 | 관외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지원 [] | | <input type="checkbox"/> 기존 부지 내 공장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신규 부지 내 공장 신·증설 | | | | | |
| 입주유형 |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 입지유형 |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 보조금 유형 | <input type="checkbox"/> 입지 <input type="checkbox"/> 투자 | | | |
| 소재지(변경 포함) | 이전 또는 신·증설 전 | | 이전 또는 신·증설 후 | | | | | |
| 이전, 신·증설기업 | | | | | | | | |
| 창업기업 | | | | | | | | |
| 사업면적(m ²) | | 부지면적 | 공장용지면적 | 건축연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 |
| 이전, 신·증설기업 | 이전 또는 신·증설 전 | | | | | | | |
| | 이전 또는 신·증설 후 | | | | | | | |
| 창업기업(현 공장 소재지) | | | | | | | | |
|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 | 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 | 원 | | | |
|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 | 건축착공일 | | 업종 (KSIC코드) | | | | |
| 공장등록일 | | 준공예정일 | | () | | | | |
|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 신규채용 인원 | | |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 | | |
| |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 () |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 | | |
| 총 투자금액 (A부지 + B설비) | 원 | 설비투자금액 (B=C+D+E) | 건축비·근로환경 개선시설(C) | 시설장비 구입비 (D) | 기반시설 설치비(E) | |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보조금 신청액 | | 금 | | 원 | | | | |
|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 | | | | | | |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물류비 지원금 신청서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지원 대상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 법인 본사 소재지 | 전화 | 팩스 |
| | | E-mail. | |
| 투자유형 |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 | |
| 사업장소재지 | | 업 종 (KSIC코드) | () |
| 사업장규모 | 부지면적 | 건축규모(연면적) |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
| | | | |
| 물류운송비용 | 합 계 | 육상운송비 | 해상운송비 |
| | | | |
| 보조금신청액 | 천원 | |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1부.
2.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3. 차량등록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물류비 지원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신청서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지원 대상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 법인 본사 소재지 | 전화 | 팩스 |
| | | E-mail. | |
| 투자유형 |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기존기업 신·증설 | | |
| 사업장소재지 | | 업종 (KSIC코드) | () |
| 분양가 | 원/㎡ | 분양가 납부 |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
| 규모 | 부지(입지)면적 | 건축 연면적 | 보조금 인정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3배수 내) |
| | | | |
|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 담보방법 | |
| 보조금 신청액 | 금 | 원 |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의3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1부.
 2. 부지대금 완납 증빙서류(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3. 담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의3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5조(관내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 신설·증설 사항이 기재된 공장등록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입주계약
(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3년 내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10조의2(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1

<신 설>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표 1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유

호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

----- 별표 2-----

--.

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

시 보

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 ⑦ (생략)

----- 기업
· 법인 · 단체 · 분양전문 대행
사-----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과 ----.

④ ~ ⑦ (현행과 같음)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3월 13일

남원시 훈령 제409호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기획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 후단 중 “기획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 제3항제2호 중 “사본”을 “정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4.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기획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붙임 중 “(1) 판결문 사본 (2) 인감증명서 (3) 위임장 (4) 각서 각 1부”를 “(1) 판결문 정본 1부. (2)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청구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각서 1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소송비용 산출요령 “에시” (제25조제2항 관련)

변호사비용(여비포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의 금액으로서
“남원시 소송사건 수입변호사 보수 지급 계약”에 따라 실제 집행된 금액
(예산집행부서와 협의)

소장첨부용 인지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적용

- 1심 소가 × 0000분의 0 + 000원
- 2심 (소가 × 0000분의 0 + 000원) × 1.5
- 3심 (소가 × 0000분의 0 + 000원) × 2

※ 제소시 각종 신청사건 등 그 밖의 비용

소장 붙임용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송달료(송달료처리규칙 적용)

당사자수 × 등기우표 0회분 각 심급별로 계산

검증 및 감정료(민사소송비용법 적용)

해당 관할법원 납부명령서에 따른 지출액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인지대 : 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송달료

당사자수 × 등기우표 0회분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증명서, 소가증명 청구수수료 : 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u>기획실장</u>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②<u>기획실장</u>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p> <p>③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u>기획실장</u>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주관과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p> | <p>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 ----- ----- <u>감사실장</u>----- <u>사실장</u>-----.</p> <p>②<u>감사실장</u>----- ----- ----- ----- -----.</p> <p>③----- ----- ----- <u>감사실장</u>----- ----- ----- -----.</p> |
| <p>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u>기획실장</u>이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의 포기인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③ (생략)</p> | <p>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 <u>감사실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6조(소송문서의 심사) ①<u>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실장의 사전심</u></p> | <p><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사를 받아야 한다.</u></p> <p>②제1항 규정의 심사를 한 기획실장은 <u>별표 1의 소송심사인을 문서상단에 날인하여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u></p> <p>③문서심사관은 <u>소송문서로써 소송심사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문서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 |
| <p>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다음 각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u>기획실장</u>은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분을 비치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u>기타</u> 참고자료</p> <p>② (생략)</p> | <p>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 ----- -- <u>감사실장</u>-----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그 밖의</u> --- ②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응소·상소·제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u>기획실장</u>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p> | <p>제9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 ----- ----- <u>감사실장</u>----- ----- ----- ②----- ----- -----</p> |

| 현행 | 개정안 |
|--|---|
| <p>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 포함시켜야 한다.</p> <p>1. ~ 7. (생략)</p> <p>8. <u>기타</u> 참고자료</p> <p>③·④ (생략)</p> <p>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을 <u>기획실장</u>에게 지정·지명·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등이 사망·퇴직·전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u>기획실장</u>은 제1항에 의한 지정·지명·선임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장·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을 집행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p> | <p>-----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의</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 ----- -- <u>감사실장</u>----- ----- ----- ----- ----- ----- ----- ----- ----- -----</p> <p>②<u>감사실장</u>-----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p> |

| 현행 | 개정안 |
|--|---|
| <p>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시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p> <p>② (생략)</p> | <p>-----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p> <p>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기획실장 참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p> | <p>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 ----- <u>각 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 -----</p> <p>②----- --- <u>각 호</u> ----- ----- <u>감사실장</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
| <p>제18조(상소포기) ① (생략)</p> <p>②<u>기획실장</u>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p> | <p>제18조(상소포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u>감사실장</u>----- ----- -----.</p> |

| 현행 | 개정안 |
|--|--|
| <p>1. ~ 3. (생략)</p> <p>제23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이 시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3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 -----.</p> |
| <p>1. ~ 3. (생략)</p> <p>4. <u>기타</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생략)</p> |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24조(소송비용 회수) ①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소송사건의 비용회수는 당해 소송을 수행한 주관부서에서 <u>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회수하고, 기획실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 총괄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u></p> | <p>제24조(소송비용 회수) ①----- ----- ----- -- <u>감사실장과</u> ----- -- <u>감사실장은</u> ----- -----.</p> |
| <p>②소송주관부서는 소송비용을 회수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해 소송비용 회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 <p>②----- ----- -----.</p> |
| <p>1. 소송비용 회수대상사건에 대하여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 이때 신청서식은 별지 제1</p> | <p>1. ----- ----- -----.</p> |

| 현행 | 개정안 |
|--|---|
| <p>2호서식에 의하며 <u>기획실장</u>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p> | <p>----- <u>감사실장</u>----- -----.</p> |
| <p>2. ~ 7. (생략)</p> | <p>2. ~ 7. (현행과 같음)</p> |
| <p>제25조(소송비용 산출) ①·② (생략)</p> | <p>제25조(소송비용 산출) ①·② (현행과 같음)</p> |
| <p>③소송주관부서에서는 패소자로부터의 소송비용 회수내역을 <u>기획실장</u>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 <p>③----- ----- -- <u>감사실장</u>----- -----.</p> |
| <p>2006. (생략)</p> | <p>2006. (현행과 같음)</p> |
| <p>제26조(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p>제26조(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 ----- -----.</p> |
| <p>1. ~ 6. (생략)</p> | <p>1. ~ 6. (현행과 같음)</p> |
| <p>7. <u>기타</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 <p>7. <u>그 밖에</u> ----- --</p> |
| <p>②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27조(구상권 행사) ①·② (생략)</p> | <p>제27조(구상권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p> |
| <p>③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u>기타</u>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p> | <p>③----- ----- ----- <u>그 밖의</u> ----- ----- -----</p> |

| 현행 | 개정안 |
|---|---|
| <p>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28조(임의변제) ①·② (생략)</p> <p>③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구일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p> <p>1. (생략)</p> <p>2. 판결문 <u>사본</u>(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p> <p>3. <u>인감증명서</u></p> <p>4. <u>위임장</u>(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p> <p>5. (생략)</p> |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임의변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정보</u>-----</p> <p>-----</p> <p>3. <u>청구인의 신분증 사본</u>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p> <p>4. <u>위임장</u>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p> <p>5. (현행과 같음)</p> |
| <p>제33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실·과·소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u>기획실장</u>의 협의를 거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행정심판 청구를 재결청에 진</p> | <p>제33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p> <p>-----</p> <p>-----</p> <p>-----</p> <p>----- <u>감사실장</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

| 현 행 | 개 정 안 |
|---|---|
| <p>달할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u>기획실장</u>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5조(송무지도) ① (생략)</p> <p>②제1항에서의 송무지도는 <u>기획실장</u>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p> <p>③송무지도를 실시한 <u>기획실장</u>은 지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법령의 개정(건의) 등 <u>기타</u>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 <p>----- ----- <u>감사실장</u>----- -----.</p> <p>제35조(송무지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감사실장</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③----- <u>감사실장</u>----- ----- ----- ----- <u>그 밖에</u> ----- -----.</p> |

남원시 고시 제2020-4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
 - 나. 사 업 량 : 9,950m²
 - 다. 사업기간 : 2018. 10. 17. ~ 2020. 08.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산*면 황*길 1**-4 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20 - 46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3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 영농 도모, 소득증대
3. 사 업 비 : 1,042백만원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외 12지구
 - 나. 사 업 량 : 6.2km
 - 다. 사업내용 : 농로 포장 (콘크리트 포장)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5. 사업기간 : 2020. 03. ~ 2020. 12. 31.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89)

남원시

| 지구 | 위치 | | 경지정리 사업시행 | | 사업지구 현황(km) | | | | 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 | | | 시행 년도 | 면적 (ha) | 전체 계획 | 사업 완료 | 2020년 계획 | | | |
| | | | | | | | 사업량 | 노선수 | | |
| 4지구 | 읍면동 | 리 | | 217.7 | 13.61 | 9.2 | 4.41 | 10 | 742 | |
| 화정 | 화정 | | 2019 | 27 | 2.15 | - | 2.15 | 5 | 425 | |
| 포암 | 수지 | 유암 | 2019 | 7.1 | 0.70 | - | 0.70 | 2 | 140 | |
| 갈촌 | 수지 | 유암 | 2019 | 5.6 | 0.36 | - | 0.36 | 2 | 86 | |
| 세전 | 송동 | 세전 | 1984 | 178 | 10.4 | 9.2 | 1.2 | 1 | 91 |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지구 | 위치 | | 경지정리 사업시행 | | 사업지구 현황(km) | | | | 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 | | | 시행 년도 | 면적 (ha) | 전체 계획 | 사업 완료 | 2020년 계획 | | | |
| | | | | | | | 사업량 | 노선수 | | |
| 9지구 | 읍면동 | 리 | | 1,851 | 101.2 | 66.4 | 1.81 | 18 | 300 | |
| 용산 | 덕과 | 용산 | 1988 | 232 | 12.7 | 12.1 | 0.32 | 4 | 52 | |
| 문촌 | 보절 | 황벌 | 1997 | 72 | 4.1 | 3.8 | 0.14 | 2 | 22 | |
| 안평 | 보절 | 성시 | 1995 | 148 | 11.7 | 8.4 | 0.27 | 3 | 62 | |
| 진기 | 보절 | 서치 | 1996 | 305 | 15.8 | 7.9 | 0.22 | 2 | 33 | |
| 대곡 | 대산 | 대곡 | 1999 | 371 | 19.3 | 12.4 | 0.23 | 1 | 35 | |
| 강석 | 대강 | 사석 | 1998 | 149 | 7.8 | 7.6 | 0.16 | 1 | 24 | |
| 부절 | 산동 | 월석 | 1996 | 230 | 11.9 | 7.2 | 0.10 | 1 | 15 | |
| 서천 | 운봉 | 서천 | 1992 | 273 | 14.2 | 3.5 | 0.26 | 3 | 40 | |
| 일대 | 인월 | 유곡 | 2007 | 71 | 3.7 | 3.5 | 0.11 | 1 | 17 | |

남원시 고시 제2020-4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3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산34, 산34-4
 - 나. 사 업 량 : 1,035m²
 - 다. 사업기간 : 2020. 03. 31. ~ 2021. 02. 28.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산*면 신*길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20 - 553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로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한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에 대해 이를 폐지하고 상수도 요금 고지방법에 기존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 등을 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부고지 방법의 병행 개정 (안 제31조)
 - 납부고지서에 의한 고지 외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전자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한 고지 병행
- 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4조, 안 제39조)
- 다. 그 밖에 용어를 통일하고 어법에 맞게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오들1길 56(도통동)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863),
팩스(063-620-6720) 및 직접방문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 063-620-6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0. 3.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로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한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에 대해 이를 폐지하고 상수도 요금 고지 방법에 기존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 등을 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부고지 방법의 병행 개정 (안 제31조)
 - 납부고지서에 의한 고지 외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전자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한 고지 병행
- 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4조, 안 제39조)
- 다. 그 밖에 용어를 통일하고 어법에 맞게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3. . ~ 2020. 03.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급수설비공사””를 ““급수공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급수설비공사의 구분)”을 “(급수공사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복 하는”을 “복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거 하는”을 “제거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급수설비공사”를 “급수공사”로 한다.

제10조 중 “급수설비공사”를 “급수공사”로,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를 “검사공무원은 신청자의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급수설비공사비”를 “급수공사비”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급수설비공사”를 “급수공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급수설비공사의 직권시행)”을 “(급수공사의 직권시행)”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급수설비공사”를 각각 “급수공사”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말일에 납부”를 “말일로”로 한다.

제3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납액은 독촉안내문을”을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로 한다.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전자메일) 및 휴대폰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4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9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급수설비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2. “급수공사”----- ----- -----. |
| 3. ~ 9. (생략) | 3. ~ 9. (현행과 같음) |
| 제5조(급수설비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 -----.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u>수복</u> 하는 공사 | 3. ----- ----- ----- <u>복구</u> 하는 ----- |
|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u>제거</u> 하는 공사 | 4. ----- ----- ----- <u>제거</u> 하는 ----- |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 ② ----- ----- ----- ----- ----- |

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하다고 -----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준공검사) 급수설비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

----- 검사공무원
은 신청자의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설비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 급수공사비-----

-----.

-----.

② ~ ⑤ (생략)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설비공사의 직권시행)

①·② (생략)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설비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에 납부 한다.

②·③ (생략)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분담금) ① -----

----- 급수공사-----

-----.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② 급수공사-----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말일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 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② (생략)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은 독촉안내문을 발부한다.

④ (생략)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 4. (생략)

5.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 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39조(정수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④ (생략)

(전자메일) 및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39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 | | | |
|---|---|--------------------|--|
| 1. 의견제출 목록 | |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 3. 의 견 | | | |
| 4. 기 타 | | | |
|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